

반월성 유감

얼마전 경주에 가서 신라 천년역사의 유적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까지 수출된다는 고급 관광버스와 높은 교육을 받은 안내원의 설명과 국립공원 지정후 문화재 보존도 잘되어 있어 15년만에 다시찾는 경주는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으며, 이만하면 외국인에게 우리의 옛문화를 자랑할만 하다고 생각하였다.

천마총에서는 계란이 출토되어 신라시대 상류사회에서 계란을 애용하였음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뿌리를 찾는다면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또 신라에는 박혁거세, 김알지 등 계란과 관계된 설화도 많이 있으며, 제림(鷄林)이란 지명도 양계인에게는 반가운 지명이다.

관광버스는 박물관을 지나 반월성에서 안내원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4대 석탈해왕으로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신라의 궁이 있었던 곳으로, 탈해왕이 어려서 사

냥을 나왔다가 이곳에 서기가 서려있는 것을 보고 이땅을 갖고 싶어 밤에 몰래 이곳에 솟을 묻어놓고 내땅이니 내어 놓으라고 소송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은 임금에게까지 올라가 임금이 이곳이 내땅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느냐고 묻자 석탈해는 우리는 대대로 대장간을 하여온 집안이라 지금도 그곳을 파보면 솟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금이 사람을 시켜 땅을 파보았더니 과연 솟이 나와서 그땅이 석탈해의 것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된후에 궁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전설이다.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지혜로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미국전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의 경우에는 그의 소년시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뱃나무를 찍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한 전설이 있다. 또우리가 국민학교때 정직을 배우며 워싱턴의 일화를 들어 왔다.

우리의 조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사기꾼의 후손으로서 오늘날도 석탈해왕의 사기수법을 연구 발전시켜 꽃을 피우고 있다. 어음사기, 부동산사기, 은행에서 수기통장사기, 지령이사기 등 헤일수 없이 많은 석탈해왕의 후손들이 이땅에 있다. 신용사회가 이루어 질리 없다.

최근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뱃나무가 건너간 것이 100년전으로 밝혀져 200년전의 조지 워싱턴의 뱃나무 전설은 실제 있었던 사실보다는 국민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교훈을 국가원수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어느 사회가 안정되고 서로 믿는 사회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양계산업 및 양돈사업의 계열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정직과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서구사회에서의 성공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토양에는 뿌리 내리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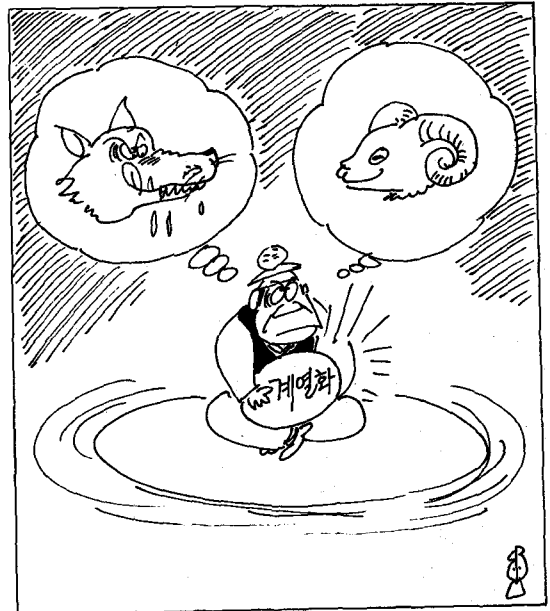
계열화의 성공은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탈해왕의 후예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공공규범이 공전하면 발전 저해

축산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어 8월 2일 공포되었고 그의 축산업과 관련된 사료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또기왕에 공포된 축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가까운 시일내에 개정공포 되리라고 한다. 더 발전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법령 정비 작업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법이 개정될 때는 발전 지향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규제는 창의와 자율성을 잃어 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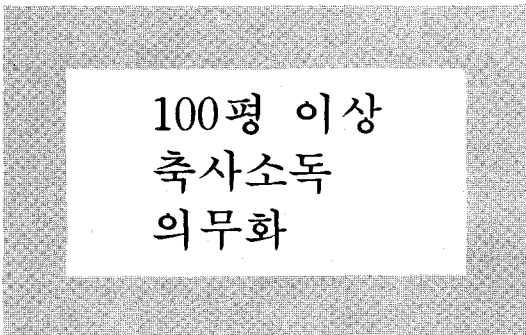


침체를 가져 오게 된다. 과거 배합사료의 가격과 품질을 획일화하려던 노력이 얼마나 잘못이었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을 때에도 문제이다. 과거 축산물가공처리법중 도제유통에 관한부분이 그러했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한 것은 축산업계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은 공전할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나타나는 모습은 교과서 대로 구조적 부패, 저항, 도피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귀중한 체험을 한바 있다.

도제법이 적극적인 저항의 방법으로 나타났다면 처음의 종계장 및 부화장시설기준이나 종란에 도장찍는 것 등은 도피 또는 부조리의 형태로 나타날수 밖에 없었다.

모두다 양계산업 발전을 억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번 축산법시행령에서 나타날 축산업에 대한 허가 등록 규제 등은 현실에 맞도록 제정되어 공전하는 일이 없고 발전의 촉매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보사부는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83. 12. 20일 법률 3662호) 소독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 대통령령 11459호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연면적 300m² 이상의 축사도 포함시켰다.

〈관련법규〉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消毒措置) 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사,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전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정 76·12·31 법2990, 83·12·20 법3662)

②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83·13·20 법3662)

제40조의2 (소독업무의 대행)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정 83·12·20 법3662) [본조신설 76·12·31 법2990]

제40조의3 (소독업의 허가) ①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수수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자가 제 2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20 법3662]

제40조의 4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소독업자라 한다)가 그营业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3·12·20 법3662]

제40조의 5 (소독관리인) ① 소독업자는 소독업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을 두고 그로 하여금 소독업무를 직접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독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2. 소독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3. 기타 소독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本條新設 83·12·20 법3662]

제40조의 6 (소독의 기준과 방법 등) 소독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3·12·20 법3662]

제40조의 7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숙박업계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과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업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의한다)
7. 체육관 및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설강습소(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
9.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10. 가족사육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

[본조시설 84·6·30대령 11459]

- 제11조의3** (소독관리인의 자격) 법, 제40조의5 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생물학과·화학과·농화학과·농생물학과·생물공학과·미생물학과·화학공학과·환경공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2. 의사·약사·수의사 또는 위생사의 면허증 소지자
 3. 보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6급 또는 6급 이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본조시설 84·6·30대령 11459]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의 종류 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
 2. 증기소독
 3. 자비소독
 4. 약물소독
 5. 일광소독
- ② 제 1항의 소독의 종류별 실시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다.

제20조의 2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본조시설 79·6·21보사령 629]

제20조의 3 (소독업무 대행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일정한 기간 소독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소독의 종류별 실시방법

1. 소 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증 소각하여야 할 물건은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2.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내의 공기를 배제하고 한시간 이상 섭씨 100도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퇴색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증기소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른 물건에 염색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물건과 혼합하여 증기소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비소독

소독할 물건을 전부 물에 적시어 30분이상 자비하여야 한다.

4.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에 살포하여야 한다.

가. 석탄산수(방역용 석탄산 3%, 물 97% 혼합액)
 석탄산수를 만들 때에는 정량의 방역용 석탄산에 소량의 온수 또는 물을 정량이 되도록 서서히 가하며 혼합한 후 진탕하여야 한다. 석탄산수는 사용할 때마다 이를 진탕하여야 한다.

나. 크레졸수(크레졸액 3%, 물 97% 혼합액)
 크레졸수를 만들 때에는 정량의 크레졸 비누액에 정량의 물을가하여야 한다. 크레졸수는 사용할 때마다 진탕하여야 한다.

다. 승홍수(승홍 0.1%, 보통식염수 0.1%, 물 99.8% 혼합)

승홍수를 만들 때에는 정량의 승홍 및 보통식염을 정량의 물에 용해하여야 한다.

승홍수는 금속제가 아닌 용기에 저장 하여야 한다.

라. 생석회(소량의 물을 가하면 열을 발하여 붕괴하는 것)

(1) 생석회말(생석회에 소량의 물을 가하여 분말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소량의 물을 가하여 분말하여야 한다.

석회유(생석회 20%, 물 80%)

석회유를 만들 때에는 정량의 생석회에 정량의 물을 서서히 가하고 충분히 저어야 한다.

석회유는 사용하기 직전에 이를 만들어야 하며 사용시마다 저어야 한다.

마.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물 95% 혼합액)
 크롤칼키수의 제법 및 용법은 석회유에 따른다.

바. 포르마린수(포르마린 3%, 물 97% 혼합액)
 포르마린수를 만들 때에는 정량의 포르마린에 정량의 물을 가하여야 한다.

포르마린수는 사용하기 직전에 만들어야 한다.

사. 포르말데히드

포르말데히드는 포르마린을 분무하여 발생시키거나 적당한 장치에 의하여 이를 발생시킨다.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실내의 용적 1m³ 당 포르마린 5g 이상을 분무시키거나 포르말데히드 가스 6g 이상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약 40g 이상의 물을 증발시키는 비율로 포르말데히드를 만든 후, 7시간 이상 밀폐하여야 한다.

(2) 물건의 내부에 이르기까지 소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진공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진공장치에 의한 소독시간은 그 장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 밀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기타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 기타 물건으로서 제 1호 내지 제 4호의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79·6·21 보사령 629>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

기 술 능 력	시설 및 장비기준
1. 소독관의 책임자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극물 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생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실은 30m ² 이상이어야 하며, 전화가 가설되어 있어야 한다.
2. 종업원으로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2호, 제 4호 및 제 5호의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인이 있어야 한다.	2. 장 비 (1) 소독용 차량 2대 이상 (2)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차량적재용) 2대 이상 (3) 동력연막기(차량적재용) 2대 이상 (4) 초미립자 약제살포기(수레용) 4대 이상 (5) 동력분무기 2대 이상 (6) 수동압력분무기 5대 이상 (7)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 이상 (8) 방독면(세트) 및 보호용 안경 10개 이상 (9) 보호용 의복(상·하) 10벌 이상 (10) 기타 소독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3. 약품 및 기재창고 (1) 규 모 약품창고: 16m ² 이상 기재창고: 50m ² 이상 (2) 창고는 사람이 상시

- 거주하는 장소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 (3)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4) 천정 및 바닥은 판목,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5) 약취 또는 유독가스를 발생할 경우에는 그 처리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 (6) 습도 조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7) 약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 (8) 약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자물쇠설비가 있어야 한다.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비단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양축가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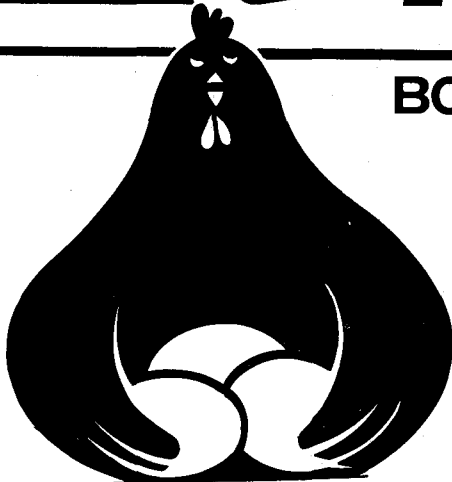
이번 법에서 보면 시장군수가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대행시킬 수 있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예상되어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춘계 대방역주간 등을 설치해서 일률적으로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러 다닐 경우 양계장에서 오히려 방역문제를 기피할 경우도 예상되며, 소독약 및 소독방법 등에 대한 농장주와의 견해차 등도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계열주체회사가 방역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 문제도 운영에 있어 연구되어야 할 점이 많다.

고농도 산란강화제

보나에그



BONAEGG <수용산>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단동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연구갈리227 ☎수원 3423/4